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11. 18-----사하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3. 11. 18

다. 상정일자 : 제115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 5차 총무위원회(2003. 12. 18) ,원안가결

2. 제안설명요지(장일룡 총무과장)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국가 및 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업무등 수당을 인상하고,
- 고용직공무원인 방법원이 지도원으로 2003. 8. 31부로 구조조정이 완료됨에 따라 방법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수당을 삭제코자함

나. 주요골자

- 제2조 일반직의사 및 전임계약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약무·간호직렬제외) 일률적으로 월 30만원 인상(안 별표)
- 제3조 방법수당 삭제

3.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7894호)

4.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국가 및 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위한 행정자치부의 승인사항으로 본 조례 별표1. 별표2의 일반직의사와 전임전문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일률적으로 300,000원씩 인상하는 것을 2003. 7. 1부로 소급적용하려는 사항과
- 제3조(방법수당)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이는 2003. 8. 31부로 방법원이 없어짐에 따른 당연한 조치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함

5. 질의답변요지 : 생략

6. 토 론 요 지 :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